□특집□

금융신용정보 정책방향

김 인†

◈ 목 차 ◈

1. 금융신용정보의 의의
2.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연혁
3.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
4.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정책방향
5. 결 론

1. 금융신용정보의 의의

금융신용정보란 법적[1]으로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가리키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주체가 지불하는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등 신용공여자는 자금의 공급에 앞서 자금수요자의 원리금상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신용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신용정보는 효율적인 신용분배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를 육성·발전시키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신용정보가 잘못 집중·관리될 경우 각 경제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금융신용정보관리제도, 즉 금융신용정보의 수집·처리·관리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상태였으므로 금융기관은 신용소비자의 신용도보다는 담보위주의 여신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신용소비자의 객관적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금리차별화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매우 낮았던 것이다. 신용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규제금리하에서 자신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간 경쟁이 가열되고 금융겸업화에 따른 금융업권별 경쟁로 인하여 담보위주 여신관행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신용위험을 통해 신용소비자에 대한 금리차별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금융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먼저 신용정보관리제도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고찰한 후,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대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연혁

2.1 외국의 제도 연혁

금융신용정보업이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는 미국인데 이는 미국인의 높은 이동성과 소비자금융

† 정 회 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미 남북전쟁(1861~1865)이후의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변동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신용공여자와 차입자간 "금융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했다.

즉,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는 신용공여기관들이 차입자의 소득능력·재산 등 신용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담보없이는 신용공여 여부의 결정이 힘들었다. 결국 담보가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용여신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금융신용정보 교환조직의 결성이 필요하였다. 그결과 19세기말 특정지역의 부도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이 나타났으며 가계의 지역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용정보기관간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나타나 1906년 처음으로 6개의 신용정보기관들이 신용정보교환에 합의하고 National Association of Mercantile of Agencies를 결성하였다.[2)]

그후 정보기관의 수 및 수집정보의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수집비용을 크게 낮추어 신용공여자들간의 정보교환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신용정보기관간 경쟁을 제한했던 지역적 분할현상을 제거시켜 전산화된 대형 신용정보기관이 정보를 집중하는 현상을 낳았다. 결국 지역적 독점체제였던 신용정보 네트워크는 전국단위의 과점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1924년 관동대지진 이후 금융공황기에 금융신용정보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과 달리 금융신용정보의 교환 및 집중기관이 없고 각종 협의회의 형태로 정보집중기관이 존재한다. 현재 각 협의회별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2) 현재는 National Association of Credit Management를 통해 금융신용정보가 교환되고 있음(현재 35,000이상의 회원사)

2.2 우리나라의 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체계는 도입당시에는 여신정보 집중관리 등 정책당국의 정책목표 수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축적된 신용거래정보의 신용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점차 금융기관간 자발적인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1955년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정리에 관한 협약」과 1974년 「여신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시작된 불량거래정보 및 여신정보의 집중·교환체계는 1992년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지침」(재무부 훈령)에 의해 통합되었으며,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신용정보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집중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3.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감독원등 정책당국이 신용정보관리의 주체였으며, 개인에 대한 여신정보도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민간주도로 이뤄진 미국의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중 미흡한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3.1 우량 금융신용정보의 집중 부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금융신용정보는 주로 제1금융권의 불량거래 정보이며, 여신정보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이상, 기업의 경우 1억원이상을 집중하고 있다.(아래표 참조)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신용정보 등록기준〉

구분	정 보 내 용	대 상 거 래 처
개인 정보	1.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1개 금융기관의 가계자금대출금 잔액 1천만원 이상인 개인
	2.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당해개인
	3.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기업 정보	1. 가계 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개인기업 및 법인
	3. 여신 및 담보 현황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 1억원이상인 기업체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4. 계열기업 상호채무보증 현황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법규위반 사항·부도사항 및 연체사항 등 신용불량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채무상환실적·신용카드 결제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우량정보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진정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애로가 크다.

3.2 공공정보의 활용미흡

금융신용정보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측정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거래실적(세금납부 실적·공공요금 납부실적·각종범칙금 체납상황 등)도 함께 분석되어야 하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부분적인 금융거래실적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종 공공정보를 관장하는 법령상에서 동 정보의 공개 및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3.3 금융신용불량자 처리 경직

현재 각 금융업권은 금융신용불량자의 관리를 위해 각기관별 임무를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은행·보험·증권등 업권별로 21개의 협약이 있다. 이와같이 협약은 신용불량자의 범위·등록기간 등이 업권별로 달라 통일적인 금융신용정보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무적이며 획일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하여 추가지원시 회생이 가능한 업체나 개인이라도 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3.4 기업금융정보에 대한 공신력 부족

기업금융정보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주로 수집·평가되어 해당기업의 자금조달시 금융시장으로부터 동 평가에 따른 조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무보증회사채 발행시)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투자등급 미만의 등급을 받을 경우 일반 시중금리이상의 발행금리를 부담해야 된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채 발행허가권을 보유한 신용평가기관은 현재 법령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3]에 의하여 그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인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실평가기관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 작년 대우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실질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금융정보에 대

3)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한기준

한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은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4.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에 대한 정책방향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주요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4.1 우량 금융신용정보의 확충

현재 집중·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정보(negative information)이나 대출상환실적·신용카드 결제정보 등 우량정보(positive information)를 집중시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규제금리하에서는 획일적인 대출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량 금융신용정보보다는 담보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가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우량정보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우량 금융신용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영업비밀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기관이나 타업권에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도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특히,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해당 신용주체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결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우리실정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편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신용이 좋은 자가 더 낮은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신용주체에게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우량정보의 집중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업권별로 제공될 수 있는 우량정보(예를 들면 카드사는 카드사용실적, 보험사는 보험료 납부실적 등)를 선정하여 호혜주의 원칙하에 업권별(카드사와 보험사간)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신용도가 우수한 자에게 금융기관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우량신용정보를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4.2 공공정보의 집중 및 활용증대

현재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많은 공공정보(주민등록등초본·토지대장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필요한 공공정보는 해당기관이 직접 수집하도록 추진중임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즉, 조세·주민·건설·토지정보 등 공공정보를 해당 생산기관뿐만 아니라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인·기업의 세금납부실적·부동산현황 등 공공정보를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가능하여 신용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정보의 집중은 동정보가 오·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보관리주체의 의무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4.3 금융신용 불량자 처리의 자율성 증대

전국은행연합회는 각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신용정보관리 협약을 하나로 통합한 공동관리규약[4]을 금년 7월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

4) 제2000-4차 신용정보협의회 결정사항(2000.7.28)

다. 공동규약은 주의·황색·적색거래처 구분 및 금융기관의 획일적 제재를 폐지하여 금융신용불량거래처라도 각 금융기관의 자율판단에 따라 여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융업권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업권별로 상이하던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시기를 연체발생후 3개월로 통일하였으며 채무상환시 해제사유(채무자변제·보증인변제·강제회수)를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구노력을 도모하고 이를 신용도 판단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용불량등록기간이 60일이내인자 나 소액신용불량자(대출금연체 500만원이하, 신용카드대금 연체 100만원이하)는 변제즉시 불량기록을 삭제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연체기간·금액에 따라 다른 신용불량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체기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금융기관의 실무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4.4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 제고

기업 금융신용정보를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중에 있다. 다만, 현재 영업중인 신용평가회사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중 필수적인 내용만 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기존 평가사의 기득권도 인정할 예정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입장에서도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에 의한 감독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용평가업에 대한 정당한 영업권 부여와 부실평가시 정당한 감독을 통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결 론

금융신용정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사회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위해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볼때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은 절대 정부의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각 개별주체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는 사회 다른 부문처럼 처음 출범때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의 자율화·개방화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수요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금융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정비를 통해 신용대출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용사회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이바지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본고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김 인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재정경제원 세제실
1999년-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근무